

##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ies of Civil Domain Digital Archives

배양희(Bae, Yang-hee)\*\* · 김유승(Kim, You-seung)\*\*\*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이론적 배경
  - 1)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의와 특징
  - 2)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 3)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중요성
4. 사례 연구
  - 1) 한국 쿼어 아카이브
  - 2) 서태지 아카이브
  - 3) 아이쿱 아카이브
  - 4) 소리 아카이브
  - 5) 소결
5. 면담 연구
  - 1) 연구 설계
  - 2) 면담 연구 대상 기관 일반 현황
  - 3) 면담 분석
6.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운영을 위한 제언
7. 맺는 글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6027).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과정(yanghee93@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6월 30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7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7월 23일

## 〈초록〉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상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집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수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보유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퀴어 아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4곳을 선정하여, 각각의 일반 현황과 수집정책 요소를 분석한다.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담 연구에서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9곳을 대상으로 수집정책 수립과 운용, 활용, 수집정책의 저작권 규정,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제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수집정책 운영을 위해, 수집정책 필요성의 인식 제고, 독립적 수집정책의 성문화, 필수 요소, 정기적 점검, 공개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 민간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저작권, 협력**

##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ovide a strategies for managing collecting policies through an analysis of issues on it. For the purpose, it conducts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studies on characteristics, roles, and importances of civil domain digital archives' collecting policies. As a case study, the study selects 4 archives, such as Queer Archives, Seotaiji Archives, iCoop Archives, and Sori Archives, and discusses basic status and elements of their collecting policies. Furthermore, it interviews 9 civil domain digital archives for analyzing their collecting policies' making processes, usages, copyrights issues,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s a result, this article presents alternative strategies for

awareness campaign, independency, essential elements of the efficient collecting policy management.

**Keywords** : civil domain, archives, digital archives, collecting policies, copyright, cooperation

## 1. 시작하는 글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기록에 대한 관심은 일상, 커뮤니티,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작은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생활사 아카이브, 종교 아카이브, 노동 아카이브, 성소수자 아카이브, 건축 아카이브, 재난 아카이브, 대중음악 아카이브, 예술 아카이브 등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들이 속속 설립, 운영되고 있다. 실로, 개인 기억의 영역에서부터 집단과 공동체 기록의 영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카이브가 논의되고 있다.

다수의 기록학 연구자들 또한 공공기록을 중심에 두었던 전통적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권순명, 이승휘(2009, 44, 82)는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만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록관리가 행동의 증거로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라면 민간영역 역시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였다. 박건홍(2011, 6)도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서울시의 마을아카이브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정보환경의 도래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록학의 영역에서 아카이브는 영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 또는 영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및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아카이브의 변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공간, 건물 등 물리적 실체의 부재를 상상할 수 없었던 아카이브가 디지털 기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가상 공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 아카이브는 물리적 보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경제적 편익성(김주관 2008, 39),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정보의 확장성, 그리고 이용자의 극대화되는 편의성(최석현, 박현숙, 김명훈, 전태일 2013, 12)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아카이브를 뛰어넘고 있다. 정보자원의 유통, 가공, 보존의 용이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신재민, 곽승진 2013, 307)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점은 민간 아카이브의 빠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 영역 아카이브와 공공 영역 아카이브 간의 다양한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록물이 아카이브에 입수되는 과정과 방식에 있다. 공공 아카이브가 주로 정기적 이관을 통해 기록을 입수하는 반면, 민간 아카이브에서 정기적 이관은 매우 드물다. 모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민간 아카이브들은 기록에 대한 능동적 수집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 아카이브에서 수집은 기록의 '시작'이며, 기록관리 일련의 활동과 직결된다. 특히 설립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하며 기록물의 주제와 유형, 수집 대상, 수집 방법, 아카이브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에게 수집정책은 수집의 일관성과 아카이브 지속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현재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 연구는 소략하며, 그나마도 기술 연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앞서 논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아카이브는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공공 영역의 아카이브와의 상당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 아카이브 성장 지체라는 실태를 풀어갈 해법의 출발점으로 수집정책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문헌연구, 수집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민간아카이브 4곳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그리고 9곳의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수집정책 운영을 위한 요건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공공영역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정희(2009)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사명문 개발, 수집범주 및 대상, 수집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를 제안하였다. 김지현(2014)은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 제안을 목표로 해외 국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기증·위탁 안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인 수집기준, 수집방법, 저작권 규정,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특성에 부합한 수집영역을 정하고, 명문화된 수집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민간기록관에서의 자발적 수집이 아닌 국내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이승휘(2015)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사명과 역할, 수집범위와 수집 우선순위, 격차분석, 수집 실행절차, 처분,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정책 검토를 통해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사명과 목적, 역할 및 책임, 수집범위와 수집 우선순위,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정기적

개정을 제안하였다.

민간영역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학, 기업, 문화, 교회, 전쟁 등 다양하다. 먼저, 대학기록관 수집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수연(2005)은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3개 기관을 비교 분석하여, 수집의 사명과 목적, 수집범위의 명확화, 수집의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 수혜자 등 4개의 기본 구성요소와 9개의 보완적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장윤희(2005)는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수집분야 및 범주의 설정,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 기록물 수용을 위한 지침을 구성 요소로 한신대학교 기록관 수집정책을 제안하였다. 양상미(2008)는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의 수립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기록관 사명 및 목적, 수집 지원 프로그램 유형, 수집 지원 이용자, 잘 구축된 소장 기록물의 주제 분야, 수집 기록물의 지리적 영역, 수집 기록물의 주제 영역, 수집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를 수집정책의 기본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또 다른 민간영역 아카이브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연극기록물을 다룬 정은진(2011)과 교회기록물을 논한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정은진(2011)은 연극기록물 수집을 위해 기록물의 유형과 수집 특성을 분석하여, 수집범위, 대상, 우선순위, 수집 수준, 수집 방법을 수집정책 구성 요소로 보았으며,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2015)는 교회기록물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담당자 면담을 통해 사명문, 수집범주, 수집의 우선 순위, 타 기관과의 협력, 처분을 중심으로 영락교회 기록관 현황에 맞는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와 밀접한, 민간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서해숙(2013)과 신동희, 김유승(2016)의 연구가 있다. 서해숙(2013)은 진도아리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필요성을 알아보고 대상 자료와 수집방법 및 표준화, 메타데이터 선정, 프로세스와 시스템 등 디지털 아카이

브 구축을 위한 진행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신동희, 김유승(2016)은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사명, 수집절차, 기록의 출처, 수집범위, 저작권, 협력 및 기록 공유 정책, 의사결정을 구성 요소로 하여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수집정책을 구축하면서, 오프라인 아카이브와는 차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합한 수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기술, 현황, 필요성, 사례, 정책, 저작권 등 분야도 다양하며 그 양 또한 수집정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 중 최원태(2001)는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특성, 사례를 통한 동향, 구성 요소 분석으로 미래의 이슈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박현영, 남태우(2004)는 호주 국립도서관과 프랑스 통계경제연구학회(INSEE)의 보존 정책 분석을 통해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아카이빙의 개념 및 특성에 따른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자료의 정책과는 구별되는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재민, 곽승진(2013)은 국내외 주요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수진, 신동희(2016)는 저작권 연구를 통해 적절한 이용자 안내 방법, 기록물 수집 방법, 이용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 3. 이론적 배경

#### 1)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의와 특징

SAA 기록학 용어사전(A Glossary of Archival & Records Terminology, 30-32)은 아카이브(Archives)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 가족, 조직, 공공 혹은 민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수하거나 생산한 것으

로 지속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증거로 보존되어야 하는 자료, 즉 영구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속적 가치 자료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는 조직 내의 부서(Division)를 의미하기도 하며 개인, 가족, 다른 조직의 자료를 수집하는 조직 또는 기록 수집의 건물(Building)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다중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화를 방법으로 유지 혹은 보존되는 기록” 또는 “디지털 기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록물을 전자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한 것”(신재민, 곽승진 2013, 307)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장기간 보존될 기록물이나 영구기록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물을 디지털 상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자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래의 접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보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최원태 2001, 26)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서은경(2004, 29)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디지털 [...] 정보자원의 평가 및 입수, 소장 및 보존, 접근과 같은 처리기능과 네트워크 환경, 정보기술 환경, 생산자와 이용자 환경 등 까지도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흩어져 일부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김수영, 임준근 2009, 147), “미래의 접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보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보존하기 한 시스템”(서해숙 2013, 223)이라는 다수 연구자들의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디지털 아카이브는 접근, 전시 및 이용, 검색,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셋째, “가치가 높은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 분류, 보존하며 이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전병렬 2016, 16). 즉, 디지털 아카이브는 영구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기록정보의 입수, 관리,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아카이브의 다양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아카이브 또한 기록, 가상 공간, 시스템, 조직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한 정보처리 시스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실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단순한 가상공간 또는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과 평가를 통해 기록을 수집하고, 수집된 기록물을 접근, 보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 및 활용의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 2)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민간 아카이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양성이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 아카이브와 달리, 민간 영역 아카이브는 그 설립주체, 운영방식, 서비스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다(이보람 외 2014, 195).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결과로써, 민간 아카이브는,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묶어내기에 어려운 각각의 특징을 지니는, 광범위한 범주를 아우르고 있다(윤은하 2012, 21-27).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카이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아카이브가 다루는 기록 유형의 다양성으로 직결된다. 정해진 문서 양식을 갖춘 전자 및 비전자 기록을 주로 다루는 공공 기관 아카이브와 달리, 민간 아카이브는 구술, 일기, 편지, 엽서, 포스터, 사진, 소리, 영상, 깃발, 티셔츠, 기념품 등 실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민간 아카이브의 기록은 고유한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생산자와 출처, 원질서, 집합적 관리 등의 원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윤은하 2012, 15-16).

민간 아카이브의 또 다른 특징은, 앞서 언급한 기록 입수의 방식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되고 행정행위를 기반으로 생산, 접수된 기록을 정기적

이관 방식으로 입수하는 공공 기관 아카이브와 달리, 민간 아카이브는 다양한 설립 목적에 맞는 기록을 기증, 발굴, 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가 목적하는 특정 분야 또는 주제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을 모으고, 재생산하고 있다.

민간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통해 공공 영역 아카이브가 비추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을 담아낸다. 주류의 가치관과 인식을 반영하는 기억과 기록의 한계를 넘어, 사회의 소외된 다양성을 담아냄으로써, 주류 역사의 빈 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현문수 2013, 132). 다시 말해, 민간 아카이브는 한 사회의 역사를 더욱 균형 있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로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능을 한다(윤은하 2012, 33-34). 둘째,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 아카이브가 담지 않는 기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최재희 2008, 73; 권순명, 이승휘 2009, 50-52; 이영남 2012, 11-12; 장윤이 2014, 150, 183; 엄소영, 김혜영, 명현, 김용 2017, 180-181). 셋째, 치유의 역할을 한다(이영남 2008, 240). 전쟁의 아픔, 민주화 항쟁, 재난의 아픔 등을 기록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한다(손동유, 이경준 2013, 165-170).

### 3)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중요성

수집정책은 체계적 수집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이며, 기관의 성격과 업무에 적합한 수집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이다(장윤희 2005, 24; 이정희 2009, 7-8). 즉, 수집정책은 수집을 위한 지침서이며, 잠재적 기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내서로서, 효과적 기록 수집 활동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을 담아내야 한다(강민정, 이승휘 2015, 239-240). 이러한 맥락에서 김지현(2014, 121)은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을 위해 수집정책의 특성에 맞는 수집 영역과 수집 기준, 유형을 정의하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주제와 유형, 수집 대상, 수집 방법, 아카이브의 목적과 형태 등이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의 경우,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특성에 맞는 명문화된 수집정책 수립이 더욱 절실하다.

기증을 기록의 주된 입수 방식으로 삼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에서 수집정책은 잠재적 기증을 독려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또한 타 규정이나 지침에서 다룰 수 없는 개별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 효율적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민간 아카이브의 성격과 업무에 알맞은 구체적 수집정책은 잠재적 기증 독려, 수집의 일관성과 당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민간 문서의 수집 활동에 있어 기록이 지닌 가치를 위한 폭넓은 관점을 채택하여야 할 아키비스트에게 수집정책은 필수적 도구인 것이다(Hobbs 2001, 128).

이와 같은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수집정책은 디지털 환경에서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동희, 김유승(2016, 2)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전통적인 방식의 수집정책과는 차별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수집정책을 토대로 어떤 기록을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의 홍수라는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서해숙 2013, 227).

다수의 연구자들은 수집정책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수집정책이 담아야 할 필수적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연구자들의 주요 학술논문 9편에서 나타난 수집정책 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수집정책 요소 분석

연구자	한수연 (2005)	장윤희 (2005)	양방미 (2008)	이정희 (2009)	권순명, 이승휘 (2009)	정은진 (2011)	김지현 (2014)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 (2015)	강민정, 이승휘 (2015)
수집정책 요소	수집사명과 목적	사명문 작성	사명 및 목적	사명문 개발	사명과 목적			사명문	사명과 목적
	수집범위 명확화	수집분야범주 설정	수집기록 주제영역 수집기록 지리영역 수집기록 물리형태	수집범주 및 대상	수집범위 명확화	수집범위/ 대상		수집범주	수집범주
	수집우선순위/ 제한	수집우선순위/ 제한			수집 우선순위	수집 우선순위		수집 우선순위	수집 우선순위
	수집 조건				수집 조건	수집 조건			
	수집정책 실행절차 수집정책검토/ 개정절차			수집방법 및 절차	수집정책 실행절차		수집 방법		
	수집 지원 프로그램		수집 지원 프로그램유형						
	처분관련 사항	처분					접근제한 및 처분관련 규정		
	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의 협력			수집 협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의 협력
	수집관련 담당자 정보 수집 수혜자 수집의 권한 자원공유 정책	수용 조건	수입 지원 이용자			수집기록 저작권 문제	저작권 관련 규정		

분석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가장 공통적인 수집정책요소는 ‘수집범위(범주)’와 ‘수집 사명’이었다. 다음으로는 수집 우선순위, 다른 기관과의 협력, 수집정책 실행절차(방법), 수집조건, 처분관련 사항, 수집 지원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규정 순으로 수집정책 요소가 분석되었다. 그 외 수집관련 담당자 정보, 수집 수혜자, 수집의 권한, 자원공유 정책, 수용 조건, 수입 지원 이용자 등이 수집정책 요소의 하나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수집정책 요소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에,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수집정책 요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범주의 아

카이브로부터 추출된 수집정책의 기본 요소라는 측면에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에 적합한 수집정책 요소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4. 사례 연구

다음에서는 4곳의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수집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의 대상은 첫째, 운영 주체가 민간일 것, 둘째, 성문화된 수집정책 또는 수집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성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셋째, 3년 이상 지속적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의 충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민간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아래, 사례 연구 대상을 국내 소재 아카이브로 제한하였다.

##### 1) 한국 퀴어 아카이브(Korea Queer Archive, 이하 퀴어락)

퀴어락(queerarchive.org)은 한국성적소수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기록들을 수집 정리하여 공유, 검색,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다. 2002년 아카이브 설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아름다운재단의 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실질적인 공간과 단체가 설립되었다. 현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퀴어락’이라는 명칭은 한국 퀴어 아카이브의 애칭으로서, ‘Queer’와 ‘Archives’ 두 단어를 조합하고 ‘즐거운 樂’의 의미를 더해 ‘퀴어의 즐거움이 되는 아카이브가 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퀴어락은 성적소수자 집단의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퀴어락은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와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함께 운영 중이며, 오프라인 아카이브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 위치하고 있다.

퀴어락은 수집정책 수립 당시 주로 국외 성적소수자 아카이브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기록물 정리·분류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퀴어락만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퀴어락은 성문화된 ‘기증정책’과 ‘기록물 수집, 관리 및 보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기증정책’을 ‘수집(기증)정책’이라고 명명한 것에도 알 수 있듯 주요 수집 방법인 ‘기증’에 방점을 찍어 관련된 사항을 수집정책으로 성문화하였고, 그 외 수집의 범주, 선별, 평가, 습득, 기록물 정의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은 기록물관리정책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다. ‘기증정책’과 ‘기록물 수집, 관리 및 보관 정책’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퀴어락은 단행본, 논문, 연속간행물, 잡지, 단체 소식지, 자료집, 회의록, 회의 자료집, 성적 소수자 개인의 일기, 성적 소수자 관련 기사 스크랩, 성적 소수자 관련 영상물, 각종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 사진, 온라인 성적 소수자 게시물 및 화면 캡처, 성적 소수자 개인의 증언을 육성 녹음한 기록물,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포스터, 액세서리, 배지(badge) 등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기록의 유형, 형태에 관계없이 수집하고 있다.

‘기증정책’과 ‘기록물 수집, 관리 및 보관 정책’에 분산되어 있으나 수집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일반원칙, 목적, 수집 대상, 수집 범위, 수집 방법, 수집 주체, 수집 절차,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수집 기록물의 형태, 선별, 기증관련 사항, 기록물 관리 사항, 폐기 및 처분 관련 사항, 대여 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관련 규정/사항, 제한 사항, 책임 및 권한, 수집 활동의 수준 정의, 수집 기록물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 2) 서태지 아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www.seotajji-archive.com](http://www.seotajji-archive.com))는 음악인 서태지와 그의 팬들

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수집,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다. 2010년 발의되어 2011년 후원모금을 시작하였고, 2012년 3월 실질적인 메인사이트가 오픈되었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대중들에게는 음악인 서태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는 문화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공공재로 기여하고자 하며,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목표로 한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만을 운영 중이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수집정책 수립 당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고, 기록학 전공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헌정보 및 기록학 관련서적과 논문 등을 조사, 참고하여 성문화하였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운영정책’, ‘저작권정책’, ‘개인정보취급방침’, ‘자료관리정책’을 각각 따로 성문화하여 가지고 있다. 수집정책이라는 이름이 아닌 ‘운영정책’으로 성문화되어 있으며, 수집부터 대여, 열람, 관리, 수정, 폐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정책들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매체(TV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책, 문서, 웹문서, 사진, 디지털 데이터: 전자책, 소프트웨어, 이미지, 동영상, 기타), 팬덤(팬사이트, 서태지와 아이들 기념 사업회, 팬덤활동, 물품, 팬아트, 용어집, 태지매니아), 공식자료(이력, 음반, 발매영상, 공연, 프로모션, 광고, T메시지, 관련 사이트)의 3가지 분류로 서태지와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디지털 형태의 기록만 수집하고 있다.

‘운영정책’, ‘저작권정책’, ‘개인정보취급방침’, ‘자료관리정책’에 분산되어 명시된 수집 관련 요소는 일반원칙, 목적, 주 이용 대상자, 수집 대상, 수집 범위, 수집 방법, 수집 주체, 수집 절차,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수집 기록물의 형태, 기증관련 사항, 기록물 관리 사항, 폐기 및 처분 관련 사항, 열람관련 사항, 대여 사항, 수정 사항, 우선 순위,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관련 규정/사항, 제한 사항, 특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수집 수준 정의, 수집 활동의 수준 정의, 수집 제외 항목 등이다.

분류는 원출처와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할

동을 하며,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수집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일 자료에 해당하는 링크가 여러 개일 때에도 해당 웹 페이지가 없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두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집한 기록은 매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다.

### 3) 아이쿱(iCOOP) 아카이브

아이쿱 아카이브([www.icooparchive.org](http://www.icooparchive.org))는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협동조합운동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다. 아이쿱 아카이브는 2014년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에 의해 설립되었다. 과거의 기록들을 수집, 보존하여 후일의 업무와 연구의 토대가 되는 지식창고로서 기능하고, 기록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사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쿱 아카이브는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와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함께 운영 중이며, 오프라인 아카이브는 서울 구로구 연동로에 위치하고 있다.

아이쿱 아카이브는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보다는 아이쿱 생협에서 생산되는 중요자료를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저장 공간의 효율성 제고와 반영구적 보존을 위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쿱 아카이브는 수집정책이라는 이름이 아닌 '관리계획(안)'에 수집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 대상 기록물, 수집 및 이관 절차, 추후 과제 등이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계획(안)'은 요청에 의해 공개하거나 연구소 관련 행사에서 기록관리 부문 소개 및 홍보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아이쿱 아카이브는 1997년부터의 수기 기록을 비롯하여 조직운영, 조직행정, 정책, 사업, 회계, 활동/연구, 역사, 교육자료, 지역생협, 연구소 소장도서, 아이쿱 관련 연구자료, 국외 자료 등을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록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수집하고 있다.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수집과 관련한 요소는 일반원칙, 목적, 수집 대상, 수집 범위, 수집 방법, 수집 주체, 수집 절차,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기증관련 사항, 기록물 관리 사



항, 열람관련 사항, 대여 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접근 제한 사항 등이다.

아이쿱 아카이브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산하에 다양한 조직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쿱 아카이브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기록을 이관 받음과 동시에 민간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는 자발적 수집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4) 소리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soriarchive.net)는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들릴 수 있도록 수집, 기록, 보존하는 소리 전문 아카이브다. 2007년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소리를 통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소통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 소리 아카이브는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와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함께 운영 중이며,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오프라인 아카이브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다.

소리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기록물의 가치와 아카이브 설립 목적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었다. 소리 아카이브는 저작권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를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수집정책은 내부자료인 '사업계획' 안에 명문화되어 있다. 수집 관련 정책이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협력 기관에 따라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해관계자에게만 요약본으로 제공하거나 구두에 의한 설명으로 공개되고 있다.

소리 아카이브는 주제별 소리와 기획특집으로 나누어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주제별 소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환경/생태, 평화/인권/민족, 종교, 정치/사회, 인문/과학/예술, 청소년/교육, IT/인터넷/미디어, 생활/기타, 시민/지역/자치, 노동/농민, 경제/금융, 여성/소수성, 라디오, 파트너 등 총 14가지 영역에 이용자가 그들의 소리를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집

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기획특집은 미디어 교육자 1세대, 쇠귀 신영복, 늦봄 문익환, 제주올레, 김수환 추기경 등 후세대에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소리를 발굴, 수집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집정책은 주로 후자인 기획특집에 해당된다. 수집 관련 요소는 사명, 목적, 수집 방법, 수집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기증관련 사항, 협력 관련 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관련 규정/사항, 책임 및 권한 등이다.

## 5) 소결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일반 현황과 수집정책을 비교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비교 분석

	쿼어락	서태지 아카이브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주제	성적소수자 관련 기록	서태지 관련 기록	협동조합 기록	소리 기록
설립	2009	2012	2014	2007
지원 (설립 당시)	아름다운재단	시민 후원	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다음세대재단
지원 (현재)	비온뒤무지개재단	시민 후원	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다음세대재단
온라인 서비스	O	O	O	O
오프라인 서비스	O	X	O	O
모바일 앱	X	X	X	O
오픈소스 채택	X	X	X	X
수집정책 공개 여부	공개 (홈페이지)	공개 (홈페이지)	공개 (요청에 의해)	비공개 (이해관계자에게만 공개)
수집정책 요소 수	20	23	14	9
보유 정책	수집(기증)정책 기록물관리정책 (기록물 수집·관리 및 보관 정책)	운영정책 자료관리정책 저작권정책 개인정보취급정책	관리 계획(안)	사업계획 (내부자료)

분석 대상 아카이브는 모두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리 아카이브는 2007년 설립되어 만 10년째 운영되고 있고, 쿼어락은 8년, 서태지 아카이브는 5년 동안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설립과 운영의 지원 측면에서 쿼어락,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각각의 모기관 또는 재단법인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서태지 아카이브는 전적으로 시민 후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 재정 지원이 민간 아카이브의 장기적 존속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소리 아카이브에 대한 다음세대재단의 지속적 지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다.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대상 중 쿼어락,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3곳이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었고, 서태지 아카이브는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곳은 소리 아카이브가 유일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접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크게 아쉬웠다. 또한, 분석 대상 외의 다수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가 OMEKA 등 오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가 살펴본 4곳의 아카이브는 모두 오픈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지 않았다.

분석 대상 아카이브들은 서로 다른 명칭의 정책 아래, 수집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성문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집정책의 공개여부와 공개방식도 서로 상이하였다. 쿼어락과 서태지 아카이브는 수집정책을 누구나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반면, 아이쿱 아카이브는 외부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거나 연구소 관련 행사에서 소개 및 홍보를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수집정책을 비공개하고 있는 소리아카이브는 수집정책이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협력 기관에 따라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해관계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한편, 분석 대상 아카이브에서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수집정책이 하나의 독립적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쿼어락의 경우, ‘기

증정책과 ‘기록물 수집, 관리 및 보관 정책’에 수집에 관한 지침과 규정이 산개되어 명시되어 있었다. 나머지 분석 대상의 경우도 수집정책이라는 제목의 독립된 문서를 두지 않고, 수집에 관한 정책적 사항을 ‘자료관리정책’, ‘관리계획’ 등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분석 대상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공통된 요소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수집정책 요소 분석

요소	쿼어락	서태지 아카이브	아이쿵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일반원칙	○	○	○	
사명*				○
목적*	○	○	○	○
주 이용 대상자		○		
수집 주체	○	○	○	
수집 대상*	○	○	○	
수집 범위*	○	○	○	
수집 방법*	○	○	○	○
수집 절차*	○	○	○	
수집 기록의 주제영역*	○	○	○	
수집 기록의 형태*	○	○		○
기증관련 사항	○	○	○	○
기록 관리 사항	○	○	○	
폐기 및 처분 관련 사항*	○	○		
열람관련 사항		○	○	
대여 사항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
저작권 관련 규정/사항*	○	○		○
수정 사항		○		
협력 관련 사항*				○
수집 우선 순위*		○		
책임 및 권한	○			○

선별	○			
제한 사항*	○	○	○	
특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수집 수준 정의		○		
수집 활동의 수준 정의	○	○		
수집 제외 항목*		○		
수집 기록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			
총계	20	23	14	9

\* <표 1>에서 분석된 요소와 동일한 요소

4개 아카이브 수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28개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중 모든 아카이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수집정책 요소는 목적, 수집 방법, 기증관련 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4가지였다. 일반원칙, 목적, 수집 대상, 수집 범위, 수집 방법, 수집 주체, 수집 절차,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수집 기록물의 형태, 기증관련 사항, 기록물 관리 사항, 폐기 및 처분 관련 사항, 대여 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관련 규정/사항 등 총 15개 요소가 3개 이상의 수집정책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논한 학술연구로부터 분석된 수집정책 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는 사명, 목적, 수집 대상, 수집 범위, 수집 방법, 수집 절차,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수집 기록물의 형태, 폐기 및 처분 관련 사항, 저작권 관련 규정 사항, 협력 관련 사항, 수집 우선 순위, 제한 사항, 수집 제외 항목, 수집 기록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증, 열람, 대여, 개인정보취급, 기록 관리 사항, 선별 등 수집 이후의 관리 및 서비스와 관련된 12개 요소는 학술연구에서 제시된 수집정책 핵심 요소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정부 기관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와 민간 아카이브 간의 수집 방법, 지향, 서비스 방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즉, 민간 아카이브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모기관으로부터의 이관이 아닌, 이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증'을 가장 중요한 기록의 입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의 수집, 보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아카이브에서 열람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5. 면담 연구

### 1) 연구 설계

9곳의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은 2017년 4월 10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약 12주 동안 진행되었다. 각 아카이브의 실무 운영진들과 이루어진 면담은 6곳에서 대면으로, 3곳에서 e-mail을 통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대면 면담은 아카이브별로 평균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서면의 경우, 각기 최소 3회 이상의 수신과 발신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자가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아카이브 대상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질문은 기본 사항, 수집정책 성문화, 수집정책 운용과 이용, 협력, 저작권에 관한 사항으로, 양상미(2008)의 대학기록관 수집정책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 2) 면담 연구 대상 기관 일반 현황

면담 대상 기관의 설립연도, 설립 주체, 상근 인력, 운영자 전문성, 오픈라인 아카이브 제공, 오픈소스 채택여부, 주요 수집 방법, 전체 수집 규모 등 일반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면담 대상 기관의 기본 현황 (2017년 현재)

아카이브	설립 연도	설립 주체	상근 인력	운영자 전문성*	오프라인 아카이브 제공	오픈소스 채택여부
A	2008	노동운동단체	3	상근자 1인	○	×
B	2009	인권운동단체	1	-	○	×
C	2012	학술연구지원프로젝트	0	비상근 5인	×	OMEKA
D	2016	학술연구지원프로젝트	0	-	×	OMEKA
E	2012	커뮤니티	0	재능기부자**	×	×
F	2014	사회적 기업	2	상근자 1인	○	×
G	2012	인권운동단체	1	-	○	×
H	2017	인권운동단체	3	-	○	OMEKA
I	2007	비영리재단	1	기록전문가 자문	○	×

  

아카이브	수집방법	전체 수집 규모	
A	기존소장, 기증, 위탁	10,000~20,000건	미등록기록 10,000~20,000건 (추정)
B	기증, 생산, 발굴	7,000~10,000건	그 외 미정리 기록 다수
C	기존소장	10,000~20,000건	
D	방문수집	8,633건	800건 업로드 예정
E	기증, 생산, 발굴	20,000~50,000건	
F	기증, 이관, 구매, 제작	3,000~7,000건	
G	기증, 생산		파악 불가
H	기존소장, 생산	3,000~7,000건	그 외 미업로드 기록 다수
I	발굴, 생산, 협력기관 직접 업로드(계약)	3,000~7,000건	

\* 운영자 중 기록관리 전문가 참여 여부.

\*\* 19인의 재능기부로 운영됨(총괄 1인, 자료팀 11인, 디자인팀 6인, 웹팀 1인). 현재 참여 중인 기록관리 전문가는 1인.

면담 대상 아카이브는 노동, 전쟁, 성적소수자, 로컬리티, 연예인, 인권운동, 매체 기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설립 시기 또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다. 설립 주체별로는 인권운동단체가 3곳, 학술

연구지원 프로젝트가 2곳이었고, 노동운동단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영리재단이 각각 1곳씩이었다. 현재 3곳이 상근자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 외 6곳은 최소 1명 이상의 상근자가 활동하고 있다. 2곳이 3명, 1곳이 2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었으며, 3곳은 1명의 상근자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5곳이 아카이브 운영에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한 기록관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기록관리 전문가가 상근자로 근무하고 있는 곳은 2곳이었다. 다른 3곳은 비상근, 재능기부 또는 자문의 형식으로 기록관리 전문가가 아카이브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B 아카이브는 상근자가 시민아카이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D 아카이브의 경우, 설립 당시에는 기록관리 전공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다.

면담 대상 아카이브 9곳 중, 디지털 아카이브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곳이며, 6곳이 디지털 아카이브와 함께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9개 아카이브 중에서 3곳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OMEKA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수집 방법으로는 기증, 생산, 발굴 등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기존 소장 자료 또한 활용되고 있었다. 면담 대상 아카이브 대부분은 기증에 의한 수집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 외에 위탁, 방문수집, 구매, 제작, 계약에 의해 협력 기관이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기록의 입수를 위해 모기관으로부터 이관을 받는 곳은 F 아카이브가 유일했다.

전체 수집 기록의 규모가 3,000~7,000건인 아카이브가 3곳, 7,000~10,000건인 아카이브가 2곳, 1만 건 이상인 아카이브가 3곳이었다. 다만, G 아카이브는 파악 불가라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A, B, H 아카이브 담당자는 응답한 기록물의 수량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된 수량만을 의미하며 그 외에 미정리, 미등록, 미업로드 기록물이 다수 남아있다고 응답하였다.



### 3) 면담 분석

#### (1) 수집정책의 수립

9개 면담 대상 아카이브들 중 6개 아카이브만이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 3곳 중 A 아카이브는 수집에 관한 내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3년 이내에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입안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G 아카이브와 H 아카이브는 수집정책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이나 문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집정책에 대한 G 아카이브와 H 아카이브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H 아카이브는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입안할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라고 답하였고, G 아카이브는 수집정책 입안 계획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자가 수집정책의 성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고민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필요성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수집정책이 없어도 수집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문화된 수집정책이 없어도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 필요하다면 수립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집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G 아카이브)

실무적으로 볼 때, 수집정책이 없다 해도 수집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집 기록의 일관성과 품질이다. 앞서 논하였듯이, 아카이브는 사명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민간 아카이브에서 수집정책이 더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수집정책 수립의 방해 요소로는 인력 부족, 시간 부족, 의지 부족 그리고

필요성 인지 부족 등이 응답되었다. 인력 부족, 시간 부족과 같은 현실적 문제보다도 담당자의 의지 부족과 필요성 인지 부족이라는 측면이 더욱 큰 장벽으로 판단되었다.

E 아카이브와 G 아카이브 담당자를 제외한 7개 아카이브 담당자는 성문화된 수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카이브 담당자들은 성문화된 수집정책이 수집의 일관성, 수집 선정의 기준, 갈등 상황에서 의 해결책,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책 집행, 기준 적용의 일관성 때문이죠 [...] 물론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예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예외라고 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 성향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수집정책이 필요로 되는 거죠.” (A 아카이브)

“갈등이 생기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때 기본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 또한 상근자 공백 이후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추후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게 있어야 하니까요.” (B 아카이브)

면담 대상 아카이브의 설립연도는 모두 상이했지만, 대부분 설립과 함께 수집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수집정책 설립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퇴색되기 십상이다. 이에 수집정책 수립 이후, 점검과 수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엽두에 두고 [수정 사항을] 모아 두었다가 추후 나중에 논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B 아카이브)

“정기적 수정은 아니고 [...] 필요에 의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I 아카이브)

성문화된 수집정책이 존재하는 6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정기적 수집정책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아카이브가 수집정책을 수정한 경험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카이브 담당자들은 주기적인 수정보다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수정한다고 답하였다.

“디지털로 너무도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모아야 할지 [...]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에 [...] 그것에 알맞은 수집정책을 만들거나,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집정책이 나오거나 그렇게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시대가 바뀌면 기록도 바뀌기 때문에 수집정책도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아카이브)

더불어 기존의 수집정책이 점차 디지털로만 생산되는 기록 수집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디지털(born-digital) 형태의 기록에 최적화된 수집정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표 5>는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면담 대상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현황

아카이브	A	B	C	D	E	F	G	H	I
성문화된 수집정책	X	○	○	○	○	○	X	X	○
	3년 이내 입안계획 있음	-	-	-	-	-	입안계획 없음	입안계획 있음 (날짜미정)	-
수집정책 관련 내규	○	X	X	X	X	X	X	X	X
수집정책 수정 경험		○	○	○	○	○			○

## (2) 수집정책의 운용

수집정책이 수집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수집의 일관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하였다. 우선 성문화된 수집정책에 아카이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소장 컬렉션과 일치하는지 알아보았다.

“아카이브 설립 당시 구체적인 수집정책을 가지고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 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지 못했다 [...] 수집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 최근에 구체화되었다.” (F 아카이브)

“서술형으로 풀어쓰는 편이라 [...] 풀어쓰다보니 [수집정책이] 명확한 지 아닌 지 모호한 것 같아요” (I 아카이브)

이렇듯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수집정책은 개별 아카이브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장 컬렉션과의 일치성 면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수집정책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성문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집정책이 기록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명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다”(E 아카이브), “저희가 전문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I 아카이브) 등의 응답이 있었다. 수집정책에 대한 일부 아카이브 운영자의 낮은 이해도가 고스란히 반증된 응답이었다.

한편, 실제 수집 업무에서 공식적 기준 또는 지침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각 조직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전파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없이 활용될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F 아카이브)

결국, 수집정책은 아카이브 내부 구성원에게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누구나 혼란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수집 업무에서 공식적 기준으로써 활용됨에 있어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 (3) 수집정책의 활용

성문화된 수집정책과 내구가 있는 아카이브 중 수집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아카이브는 3곳, 요청에 의해 요약본으로 제공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이니까 [...] 수집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죠.” (A 아카이브)

수집정책을 요약본으로 제공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이유는 기록에 대해 낯선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수집정책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용자의 참여로 이뤄지는 기증이 주요 수집 방법인 민간 아카이브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수집과도 밀접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 외에는 대체로 수집정책 전문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성이 있었다. 다수 면담자들이 수집정책을 내부 구성원만 위한 정보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카이브 수집물의 일관성, 나아가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위해 수집정책에 벗어나는 기록의 수집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면담 대상 아카이브에 부적합한 기록의 기증 등을 거절하는 기준과 근거로 수집정책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정책 범위 외의 기록 수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또한 응답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수집정책을 거

절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이었다.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서 정리,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이면 다른 곳으로 재기증을 하거나 [...] 알려드리고 폐기를 하는 거죠.” (A 아카이브)

“혹시라도 외부 전시 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복본이 있어도 받긴 받습니다.” (B 아카이브)

복본을 받는 이유는 첫째, 추후 기록물을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열악한 보존 환경으로 인해 기존 보유 기록물 훼손과 망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본 여부에 상관없이 수집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기증자가 아카이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적절한 기증이 입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집정책 범위 외의 컬렉션 입수에 관해서 다수의 아카이브가 입수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어느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했던 것처럼 만들지는 말자는 것을 원칙으로 [...] 가치가 있다면 수집 가능합니다.” (B 아카이브)

“정책 안에서는 이런 거 수집한다, 저런 거 수집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떤 시국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그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 그래서 정책에 너무 얽매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가능성에 대해 조금 열어두는 거죠.” (I 아카이브)

기록물 소실과 수집 기회의 망실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잠재적 홍보 가치, 시대적 분위기나 아카이브 방향성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수집정책 범주 외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다수의 면담자들은 수

집정책의 유연성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오히려, 기증 거절의 주된 사유는 물리적 공간 등 보유 비용의 문제였다.

“보관 공간의 부족과 같은 사유로 기증을 받을 수 없을 때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B 아카이브)

기록 수집의 우선적 고려 요소는 기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유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함께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면담 대상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4) 수집정책 하의 협력

“다른 아카이브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록물을 안내해주거나, 다른 아카이브에서 저희 아카이브가 소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관해주는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A 아카이브)

일부 아카이브를 제외하고,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간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기록의 특성, 정보부족, 시간부족, 관심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기록 특성과 적합하거나 혹은 같은 영역에 있는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개별 아카이브가 가진 강한 특징으로 인해 타 아카이브와의 협력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식적 협력 아카이브는 없지만, 다른 아카이브 사이트를 방문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E 아카이브)

이처럼 협력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협력 아카이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아카이브에서 한 명의 상근자가 모든 기록관리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어 협력 가능한 아카이브를 모색할 여유가 없으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장애 요인이었다. 타 아카이브와의 협력은 미미했지만 아카이브 영역 밖의 타 기관과의 협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산기관이 아닌 수집기관이며, 다른 기관의 기록을 서비스하는 형태이기에 협력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D 아카이브)

“타 아카이브와의 협력은 아니지만 [아카이브 외의] 타 기관과의 협력은 많이 하는 편이죠. 최근 3~4년 간은 협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I 아카이브)

즉, 기록의 입수가 정기적 기관이나 아카이브 자체의 생산이 아니라 주로 발굴과 기증에 의해 이뤄지는 민간 아카이브의 경우에 타 기관과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5) 수집정책과 저작권

수집정책에 저작권 관련 규정의 포함 유무,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록물 저작권의 소유, 저작권 관련 문제발생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성문화된 수집정책과 내규가 있는 7개 아카이브 중에서 1개 아카이브를 제외한 모두가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아카이브가 저작권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집정책이 없는 H 아카이브 담당자 또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G 아카이브 담당자는 저작권은 준수하지만 저작권 관련 규정을 성문화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 현재는 성문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G 아카이브)

“기증 기록물인 경우에는 처리 권한을 저희한테 양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아카이브에 넘어오고, 위탁은 말 그대로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거라 모든 권한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A 아카이브)

“저희는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 저작권이 온전히 우리에게 양도한다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모두 갖진 않아요 [...] 기증받은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걸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 [...] 그러나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는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B 아카이브)

“기록물 저작권의 소유는 전부 기증자에게 있습니다.” (D 아카이브)

“실물 기증은 기록의 소유자가 기록물과 기록물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아카이브팀에 이전함을 의미하며 [...] 기증 약정 시 기증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E 아카이브)

대부분의 아카이브는 보유 기록에 따라 적절한 저작권 소유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었다. D 아카이브의 경우 기록물 저작권의 소유가 전부 기증자에게 있다. 또한 수집 방법에 따라 저작권의 소유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기증동의서를 양식화하여 허락을 구하고 있고, 구술 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술채록 동의서도 받고 있다. 그 외 대여동의서, 이용자 참여 약관, 대여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열람신청서 등 다양한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 <표 6>은 아카이브별로 구비

하고 있는 양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면담대상 아카이브별 양식 현황

아카이브	양식
A	기증 동의서, 대여 동의서, 구술채록 동의서
B	기증 동의서
C	대여 및 기증 동의서, 구술채록 동의서, 이용자의 참여 약관
D	기증 동의서, 이용자의 참여약관
E	기증 동의서, 대여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F	기증기탁 접수 신청서, 열람 신청서
G	X
H	X
I	기증 동의서

현재까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곳은 E 아카이브가 유일하였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운영 중이기에 다양한 사용자가 기록물을 업로드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고, 아카이브 팀의 모니터링 후 삭제예정 공고를 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E 아카이브)

저작권과 관련된 어려움은 여러 아카이브에서 두드러졌다.

“저작권에 있어서 저희랑 협력을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 아직은 저작권에 대해 방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I 아카이브)

이처럼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집에 있어서 저작권 협의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기록에 대한 저작권 양도가 아닌 접근에 대한 허락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곳이 많아 저작권 문제로 인

한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카이브가 많았다.

“저작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너무 포괄적이라 [...] 보통 저작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처리권한, 혹은 이용권한 이러한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A 아카이브)

이처럼 저작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 6.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운영을 위한 제언

이상의 사례연구와 면담연구를 바탕으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집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수집정책 필요성에 대해 기초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면담 대상 아카이브들은 운용이나 활용 측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록관리교육기관의 교육 또는 기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운영자의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수집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수집정책은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독립된 문건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다수 성문화된 수집정책은 다른 정책에 포함되거나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다. 즉, 종합적 정책 속의 한 부분이 아닌 ‘수집’에 집중한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수집정책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아카이브의 특성 반영, 소장 컬렉션과의 일치, 명확한 용어 사용, 공식적 수집 업무에서의 활용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집정책은 이용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내부 관계자들도 혼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셋째, 수집정책의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면담 대상 아카이브가 수집정책을 수정한 경험이 있으며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인 수정을 하고 있었다. 유연한 수집 정책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점검과 수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앞에서의 이론, 사례, 면담연구를 바탕으로,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소로 사명문,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수집 대상, 수집 주체, 수집 범위 및 수집 분야의 명확화, 수집 방법, 수집 절차, 수집 기록물의 형태,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저작권 관련 규정, 개인정보취급 방침, 기증관련 사항, 대여사항, 기록물 관리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 처분, 수집 활동의 수준 정의, 수집 기록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의 18개 요소를 제안한다. 이 요소들은 개별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성을 고려한 저작권과 개인정보취급 방침 등에 관한 요소가 수집정책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CCL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용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로그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분명한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해야 하고,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한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시해야 하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 콘텐츠의 이용 범위, 인용방식에 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증동의서, 구술채록 동의서, 대여동의서와 같은 성문화된 양식을 상황에 맞게 구비하여 허락을 구해야 한다.

여섯째, 수집정책을 공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수집정책 공개는 내외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아카이브 관계자들에게는 공식적 수집 업무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용자 혹은 잠재적 이용자에게는 기증 및 수집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수집정책을 아카이브 메인 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오프라인의 수집정책 홍보 방법으로 전시, 출판, 교육 활동에서 수집정책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더불어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메일링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7. 맺는 글

공공 아카이브가 담아내지 못하는 소외된 기억과 기록을 담아내는 것이 이 시대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위한 민간 아카이브의 첫 번째 임무는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기억과 기록을 어떻게 온전히 담아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집의 범위, 우선순위, 조건, 절차 등에 대한 고민은 아카이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집정책의 성공적 수립과 운영은 민간 아카이브의 성공과 직결된다. 더구나 디지털 포맷과 가상공간에 기반을 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수집정책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본 연구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효적 수집정책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론 연구를 통해,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한 수집정책의 중요성을 논하였고, 사례와 면담 연구를 통해, 국내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들의 수집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수집정책 운영을 위한 제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위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가 더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로 우리 시대 기억과 기록의 빈칸을 완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강민정, 이승휘. 2015.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6, 233-286.
- 곽건홍.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22, 3-35.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곽승진, 최재황, 배경재, 정영미. 2011. 과학기술분야 디지털 콘텐츠의 아카이빙 정책 연구. 『정보관리연구』, 42(4), 115-136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덕목. 2016.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기록학연구』, 49, 299-325.
- 김득중, 김동춘. 2005. 민간인학살 기록현황과 수집, 관리방안.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05-122.
- 김수영, 임준근. 2009. 디지털 향토문화 콘텐츠를 위한 XML 기반의 아카이브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15, 147-173.
- 김수진, 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기록학연구』, 49, 5-49.
- 김유승,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 김주관. 2008.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민속연구』, 17, 33-52.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김진목, 최재황, 곽승진. 2010. 과학기술 분야 콘텐츠 유형별 아카이빙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2), 1-22.
- 김화경. 2007. 기업사료의 수집, 평가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5, 219-262.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박윤성, 박유선. 2010.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1), 419-428.
- 박태연, 신동희. 2016.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21-150.
- 박현영, 남태우. 2004.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 69-76.

- 최석현, 박현숙, 김명훈, 전태일 (2013).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3(1), 7-33.
- 서은경. 2004. 디지털 아카이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개념적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3-34.
- 서해숙. 2013. 진도아리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설계. 『인문콘텐츠』, 29, 219-240.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 2014.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27-151.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신재민, 광승진. 2013.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 정책수립을 위한 문헌 및 사례 고찰. 『사회과학연구』, 24(1), 305-330.
- 양상미. 2008.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의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소영, 김혜영, 명현, 김용. 2017. 민간, 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79-205.
- 오유진, 한희정, 육혜인, 김수정. 2015. 기록사랑마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7-30.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미영. 2009. 재해 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기록학연구』, (21), 85-116.
-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기록학연구』, 39, 193-228.
- 이상민. 2016.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전략. 『기록학연구』, 48, 5-44.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기록학연구』, 18, 221-254.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 2015.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37-164.
- 이정희. 2009.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32.
- 이주영. 2011. 구술기록을 통한 민간인학살사건의 역사화. 『기록학연구』, 29, 79-127.

- 장형오, 임진희. 2017.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의 의미와 가치 연구. 『기록학연구』, 52, 174-216.
- 장윤이. 2014. 인천의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법 연구. 『인천학연구』, 20, 147-192.
- 장윤희. 2005.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3-46.
- 전병렬. 2016. 대중음악 팬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아카이브 활성화 연구: 서태지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미, 윤희목, 김정택. 2010.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보존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1(4), 205-226.
- 정은진. 2011.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9, 35-78.
- 지수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247-281.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최원태. 2001.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3-40.
- 최효진, 임진희. 2015.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기록학연구』, 46, 95-152.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수연. 2005.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문수. 2013.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27-150.
- 현문수. 2013. 민간 아카이브를 위한 기술(description).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9-64.
- 현문수, 김동철.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기록학연구』, 36, 195-231.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기록학연구』, 42, 245-285.
- Fisher, R. 2009. In search of a theory of private archives: The foundational writings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revisited. *Archivaria*, 67, 1-24.
- Ham, F. Gerald. 1975. The Archival Edge. *The American Archivist*, 38(1), 5-13.
- Ham, F. Gerald. 1993.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강경무, 김상민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 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서울: 진리탐구).



- Hobbs, C.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126-135.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IL: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